

[저작권쟁점] 다수인이 참여한 창작물의 저작권자 판단 - 대본작가의 증도교체 시 최종

결과물이 공동저작물 or 2차적 저작물인지 여부: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 1. 다수가 참여한 경우 공동저작물 성립여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 2. 드라마 대본 집필계약 중도해지 및 작가교체

극작가 A가 집필계약에 따라 총 32회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다가 6회까지 일부를 완성한 상태에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 받고 집필을 중단한 후 다른 작가들(B)에 의하여 나머지 회분 드라마 극본이 완성되어 예정 방송스케줄대로 방송 종결된 사안입니다. 집필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가 A가 드라마 극본을 완성하기로 약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 A가 드라마 제작 및 홍보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협의하여 처리하여 오다 집필계약의 해지되었고, 작가 A는 이에 대응하여 이미 작성한 드라마 극본의 이용금지 및 기존 작업성과를 이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집필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청구소송 및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3. 2인 이상이 순차적으로 창작하여 단일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않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 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

#### 4. 사안의 구체적 판단

대법원은 6회까지 일부를 창작한 작가 A와 나머지 회분을 창작하여 전체 극본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작가들(B)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극본은 작가 A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작가 A와 작가들(B)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록 전체 저작물이 각 창작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인 이상 원 저작자(작가 A)의 동의 없는 저작물 이용행위는 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재권분쟁, 침해대응/감정,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대응, A~Z 수행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